

1987년도 정부노임단가 기준고시

1987년도 정부노임 단가기준 적용요령

1. 이 노임단가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할 노무비의 기준금액을 설정한 것이다.

2. 이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이 노임단가는 기본금액을 표시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이 노임단가를 기준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제조부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상하여 산정된 단가이다.

4.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한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취지에 따라 이 노임단가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이 노임단가에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직종은 이 기준중 유사한 직종의 단가에 의할 수 있다.

6. 이 노임기준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받아 이를 조정한다.

7. 도서지역 노임단가의 적용지역은 도서지역일원(제주도, 울릉도, 포함)으로 한다.

8. 이 기준은 1987. 1. 1부터 적용한다.

○ 공사부문

(단위 : 원)

부문별	직종번호	직종명	단가
공사부문	1	쟁	부 8,530
	2	도 복	수 13,010
	3	건 축 목	공 11,330
	4	형 특 목	공 11,660
	5	창 호 목	공 11,620
	6	철 골	공 11,640
	7	철	공 10,770
	8	철 균	공 11,460
	9	철 판	공 10,930
	10	셧 터	공 11,740
	11	샷 시	공 11,130
	12	절 단	공 9,640
	13	석	공 12,070
	14	특수비계공 (15m이상)	12,870
	15	비 계	공 11,500
	16	동 발 공 (터널)	10,220
	17	조 적	공 10,930
	18	벽돌 (블럭) 제작	공 10,250
	19	연 돌	공 10,500
	20	미 장	공 11,450
	21	방 수	공 10,790
	22	타 일	공 11,350
	23	줄 눈	공 9,760
	24	연 마	공 9,890
	25	콘 크 리 트	공 10,540
	26	바 이 브 레 타	공 9,400
	27	보 일 러	공 12,380
	28	배 관	공 10,200
	29	온 돌	공 9,830
	30	위 생	공 10,100
	31	보 온	공 9,660

부문별	직종번호	직종명	단가
	32	도 장	공 11,220
	33	내 장	공 11,060
	34	도 배	공 10,640
	35	아 스 타 일	공 11,380
	36	기 와	공 11,320
	37	슬 레 이 트	공 9,450
	38	화 약 취 급	공 12,010
	39	착 암	공 10,740
	40	보 안	공 7,450
	41	포 장	공 10,500
	42	포 설	공 10,080
	43	궤 도	부 7,990
	44	용 접	공 (철도) 11,930
	45	잠 수 부	(4인조) 57,420
	46	잠 함	공 14,280
	47	보 링	공 (지질조사) 10,260
	48	우 물	공 9,380
	49	영 팀 기	사 12,490
	50	조 원	공 10,680
	51	벌 목	부 8,630
	52	조 림 인	부 9,410
	53	플랜트 기계 설 치	공 12,990
	54	플랜트 용 접	공 11,560
	55	플랜트 배 관	공 11,410
	56	플랜트 제 관	공 12,140
	57	시 공 측 량 사	사 11,780
	58	시 공 측 량 사 조	수 7,880
	59	측 부	6,110
	60	겸 조	부 5,390
	61	송 전 전	공 19,390
	62	배 전 전	공 15,860

부문별	직종번호	직종명	단가
	63	플랜트전공	13,650
	64	내선전공	12,410
	65	특고압케이블전공	17,710
	66	고압케이블전공	15,050
	67	저압케이블전공	12,480
	68	철도신호공	11,510
	69	계장공	10,590
	70	전기공사기사 1급	15,480
	71	전기공사기사 2급	12,800
	72	통신외선공	12,410
	73	통신설비공	12,700
	74	통신내선공	12,570
	75	통신케이블공	14,200
	76	무선안테나공	14,690
	77	통신기사 1급	17,210
	78	통신기사 2급	13,860
	79	통신기능사	12,460
	80	수작업반장	11,890
	81	작업반장	10,410
	82	목도	10,470
	83	조력공	7,600
	84	특별인부	9,100
	85	보통인부	6,520
	86	여자인부	4,150
	87	중기운전기사	11,690
	88	운전사(운반차)	10,040
	89	운전사(기계)	9,760
	90	중기운전조수	7,190
	91	고급선원	13,450
	92	보통선원	10,230
	93	선부	8,240
	94	준설선선장	14,830
	95	준설선기관장	13,480
	96	준설선기판사	10,660
	97	준설선운전사	10,670
	98	준설선전기사	10,570
	99	기계설치공	11,340
	100	기계공	8,990
	101	선반공	10,040
	102	정비공	10,350
	103	벨트콘베어작업공(남)	8,140
	104	벨트콘베어작업공(여)	4,060
	105	현도사	14,060
	106	제도사	10,120
	107	시험사 1급	13,770
	108	시험사 2급	11,300
	109	시험사 3급	10,440
	110	시험사 4급	8,550
	111	시험보조수	6,950
	112	안전관리기사 1급	14,440
	113	안전관리기사 2급	10,510

부문별	직종번호	직종명	단가
	114	유리공	10,450
	115	합석공	10,480
	116	용접공(일반)	11,100
	117	리벳공	11,230
	118	루핑공	8,750
	119	닥트공	10,120
	120	대장공	8,130
	121	할석공	11,760
	122	제철축로공	17,910
	123	양생공	8,070
	124	계령공	7,790
	125	사공(배포함)	12,660
	126	마부(우마차포함)	18,360
	127	제재공	10,800
	128	철도궤도공	11,120
	129	기적기사 1급	15,500
	130	지적기사 2급	13,900
	131	지적기능사 1급	9,690
	132	지적기능사 2급	7,860

○도서지역

부문별	직종번호	직종명	단가
공사부문	1	건축목공	13,210
	2	형틀목공	12,750
	3	철근공	11,350
	4	조적공	11,610
	5	미장공	12,690
	6	방수공	12,610
	7	타일공	12,870
	8	연마공(기계)	12,260
	9	콘크리트공	10,460
	10	화약취급공	15,860
	11	착암공	12,420
	12	포장공	12,440
	13	잠수부(4인조)	69,530
	14	특별인부	9,440
	15	보통인부	7,280
	16	여자인부	5,030
	17	중기운전기사	12,800
	18	운전수(운반차)	10,530
	19	중기운전조수	9,100
	20	고급선원	12,720
	21	보통선원	9,080

○제조부문

부문별	직종번호	직종명	단가
제조부문	1	기계설계사	10,350
	2	회로설계사	10,770
	3	제도사	7,330
	4	현도사	7,410

부문별	직종번호	직종명	단가	부문별	직종번호	직종명	단가
	5	마킹공	5,800		56	절연공	5,080
	6	철물재단사	7,990		57	연합공	5,070
	7	철물재단공	6,370		58	대연공	4,580
	8	산소절단공	6,820		59	테이핑공	5,320
	9	회전쇠톱공	5,970		60	케이블건조공	4,650
	10	금속쇠톱공	5,000		61	케이블제조공	4,460
	11	모형절단공	5,490		62	피복공	4,690
	12	가위절단공	4,100		63	권취공	4,500
	13	단금절단공	4,790		64	구목공	4,750
	14	초음파절단공	4,650		65	리벳공	4,510
	15	방전절단공	5,860		66	용접공	5,940
	16	샤링공	5,980		67	접점공	4,250
	17	프레스공	5,600		68	권선공	5,370
	18	밀링공	6,330		69	랍핑공	4,350
	19	쉐이퍼공	6,160		70	레이저광선공	7,530
	20	흡평공	6,250		71	양극처리공	4,050
	21	로구로공	5,560		72	합성수지피막공	5,490
	22	드릴공	5,250		73	전공침적함침공	4,320
	23	태평공	4,770		74	일반화학공	6,670
	24	보링공	6,690		75	조성화학공	6,910
	25	자동선반공	6,600		76	고무제품제조공	4,040
	26	자동선반공	6,320		77	요업공	5,920
	27	프레나공	6,270		78	유리제품제조공	5,460
	28	스롯타공	6,450		79	그라인다공	5,260
	29	볼반공	5,270		80	지석연마공	5,720
	30	장판공	5,700		81	사세척공	3,860
	31	판금공	6,440		82	빠후공	4,720
	32	함석공	6,920		83	콤파운드연마공	5,610
	33	문자조각기공	5,880		84	전해연마공	5,960
	34	모형조각기공	5,700		85	화학연마공	5,460
	35	3본로라공	6,640		86	호학연마공	5,660
	36	벤딩머신공	5,110		87	도장공(취부)	5,710
	37	절곡공	5,870		88	도장공(붓칠)	5,990
	38	수동교정공	6,160		89	목공도장공	4,910
	39	밸런스머신공	5,550		90	빠데도포공	6,100
	40	요철공	4,910		91	홈밍선공	5,600
	41	열처리공	6,150		92	배전기체공	4,070
	42	용해공	5,960		93	침기체도금공	6,790
	43	금형공	7,000		94	침기체도금공	5,020
	44	목형공	6,600		95	사침체출출공	4,760
	45	주물공	6,300		96	성형출출공	4,790
	46	다이카스트공	5,870		97	압출재공	5,290
	47	단조공	6,540		98	제작재공	5,600
	48	압연공	6,500		99	제작재공	6,310
	49	인발공	4,650		100	정척공	4,470
	50	압출공	5,910		101	제작기계운전공	5,690
	51	합금공	6,420		102	목재건조기제작공	5,110
	52	제금공	5,300		103	합판제조공	3,730
	53	연화공	6,310		104	가구공	6,000
	54	신선공	5,100		105	목공및유리공	6,700
	55	연선공	4,460		106	벨트콘베어작업공	6,090

부문별	직종번호	직종명	단가	부문별	직종번호	직종명	단가
	107	부 품 조 립 공	4,650		147	염 직 공	5,220
	108	전자제품조립공	4,400		148	관 권 공	3,440
	109	약전기계조립공	5,820		149	재봉기계사	5,890
	110	강전기계조립공	6,600		150	방직기계보전공	6,740
	111	경기계조립공	5,540		151	편 직 공	4,340
	112	증기계조립공	6,380		152	횡 편 공	6,250
	113	제 품 시 협 공	6,200		153	제 화 공	4,570
	114	제 품 조 정 공	5,230		154	피 혁 공	3,790
	115	제 품 검 사 공	4,750		155	빵·과자및식품류제조공	5,400
	116	물 품 포 장 공	4,200		156	조 리 사	5,790
	117	철강포장공	4,950		157	영 양 사	7,250
	118	도 안 공	8,060		158	남 자 인 부	5,180
	119	제 본 공	6,480		159	여 자 인 부	3,460
	120	공 판 인 쇄 공	6,770		160	작업반장	6,940
	121	옵셋인쇄공	7,250		161	양곡처리공(남)	7,610
	122	활판인쇄공	7,230		162	양곡처리공(여)	4,120
	123	사 진 제 판 공	7,480		163	콤퓨터운전사	7,430
	124	인쇄동판제조공	6,890		164	기계기술공	7,750
	125	인쇄연판제조공	6,420		165	보 선 공	6,650
	126	활판식자공	6,590		166	차량정비공	7,980
	127	문 선 공	6,870		167	기계정비공	7,620
	128	필 경 사	9,120		168	안전관리사	10,380
	129	공 판 타 자 수	7,020		169	품질관리사	11,970
	130	프린트인쇄	5,690		170	품질관리공	5,630
	131	교 정 사	8,010		171	다듬질공	5,280
	132	지 류 재 단 공	5,880		172	증기운전사	7,800
	133	직 물 재 단 사	8,730		173	콤퓐터S/W기사	13,240
	134	직 물 재 단 공	4,270		174	콤퓐터H/W기사	14,450
	135	상 침 공	3,820		175	통신기계조립공	3,750
	136	하 침 공	3,480		176	콤퓐터키편치공	6,170
	137	이 본 침 공	4,230		177	통신외선공	7,980
	138	오 바 로 그 공	3,950		178	통신내선공	7,090
	139	징 겸 기 공	3,380		179	무선안테나공	7,470
	140	인 타 로 그 공	3,670		180	통신기사1급	14,120
	141	스 냅 공	3,810		181	통신기사2급	10,710
	142	연 단 공	3,790		182	통신기능사	6,110
	143	직 포 공	3,860		183	목제포장공	5,520
	144	침 염 공	3,730		184	목 도	5,400
	145	연 사 공	3,940		185	사진식자공	7,740
	146	정 경 공	3,910		186	도자기및애자공	6,710

공동주택
지하층
활용촉진

공동주택지하층은 대피시설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평상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지하층에 입주민의 공동주거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인 도서실, 입주자 회의실, 관리사무소, 주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경우 동지하층을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조체의 층고 및 이용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기타 환기, 배수, 채광 등 환경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 등을 하여 공동주택 지하층이 적극 활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 1. 10